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2가단50432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1. A

2. B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김윤진

변론 종결2024. 10. 30.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과 소외 C1)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9. 체결된 매매계약을 51,929,548원 및 그 중 50,983,318원에 대하여 2022.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 2) 원고는 2020. 4. 2. 소외 C이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보증인 C, 보증금액 50,860,000원, 보증기한 2019. 10. 15.까지(그 후 2021. 10. 12.까지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C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관련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4) 소외 C은 채무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2. 2.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 주식회사에게 50,983,31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22. 2. 16. 현재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51,929,548원(= 대위변제금 50,983,318원 + 추가보증료 278,190원 + 가지급금 668,040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2022. 1. 1.부터 연 8%이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무'라고 한다).

나. 매매계약 등의 체결

- 1) 소외 C은 2020. 6. 9. 피고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11485호로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은 2021. 11. 1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23348호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 6. 9.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소외 C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수익자 및 전득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6. 9. 당시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소외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발생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2. 2. 11.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무자력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7, 10 내지 13,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C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중랑세무서 및 고양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6. 9. 당시 소외 C은 적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244,548,000원²⁾에 이르는 반면, 당시 소외 C의 소극재산은 채무 합계액 66,920,468원(=
국세 체납액 2,491,820원 + 종합소득세 체납액 2,572,330원 + 양도소득세 체납액 5,517,770원 +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4,409,000원 + 이 사건 구상금 채무 51,929,548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원고가 2024. 10. 21.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C의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한 각 채무들은 모두 사해행위시인 2020. 6. 9. 이후에
발생한 것들이므로, 위 소극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백규

별지

1) 이 사건 공동피고였다가 2022. 6. 22.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제시하는 갑 제17호증 감정평가서의 순번 1~4 토지의 감정평가액 173,275,000원에서

제1 매매계약 당시 소외 C의 소유가 아닌 순번 3 토지(강원 평창군 F 대 214m^2)의 가액

31,030,000원(= $214\text{m}^2 \times 145,000\text{원}$)을 공제한 금액 142,245,000원에 순번 5 G동호 건물의

감정평가액 102,303,000원을 더한 금액